



제344회 정례회
2015. 12. 16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◆ 충청북도 청소년 성문화센터(이동형)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12월 11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2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(이동형) 운영 위·수탁 협약기간 종료(2015.12.31.)에 따라 민간위탁 재협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위탁 대상 :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(이동형)

나. 추진 계획

- 수탁기간 : 2016.1.1. ~ 2017.12.31.(2년간)
- 수탁기관 : 청소년(성교육)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
 - ※ 現 수탁기관 : 사)청주여성의전화('13.9.6~'15.12.31)
- 수탁방법 : 공모 선정 또는 현 수탁기관과의 재협약
 - ※ 재계약시 공모절차 생략, 선정심의위원회 심의·결정(여성가족부 지침)
- 위탁주요사무
 -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원거리 지역 찾아가는 성교육(성교육 버스 활용)
 - 체험관 및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

- 아동·청소년 등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
- 유치원, 각급 학교, 청소년수련시설 등 출장 성교육
- 위기청소년 성상담 및 사이버 성상담
- 기타 청소년기본법과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협약사무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(이동형) 운영 위·수탁 협약 종료(2015.12.31.)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재협약을 추진하고자, 「**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**」 제4조 및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 도의회의 위탁동의를 받기위해 제출함.
- 충청북도에서는 아동·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도내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전문기관인 “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”를 2007년 4월에 설치하였음.
 - 고정형 성문화센터의 경우는,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위탁운영자의 중도해지 신청으로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“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”으로 직영 전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
 - 이동형 성문화센터는 2013년 9월에 설치된 후 수탁단체 공모절차를 거쳐 “사)청주여성의전화”에 위탁 운영중에 있음.
-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이 어려운 도내 원거리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“충청북도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”의 위탁기간이 올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「아

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7조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사무의 민간 위탁운영에 대한 도의회 동의 명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※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1(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- 다만, 우리도의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정형과 이동형의 운영방식을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.

< 참고자료 1 :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현황 >

(고정형)

- '07. 4월 :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(청주시 상당구 수동)
- '07. 5. 4 ~ '12. 12. 31 : 한국청소년충북연맹 위탁운영
- '13. 1. 1 ~ '15. 12. 31 : 한국걸스카우트충북연맹 위탁운영
※ 위탁운영 중도해지 신청 : '13. 11. 5(재위탁 공모 2회 : 적격단체 無)
- '14. 1. 1 ~ 현재 :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직영전환

(이동형)

-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검토(지사님 방침) : '13. 1. 31
-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신청 및 선정 : '13. 2. 5, '13. 4. 17
- 수탁단체 공모(2회) : '13. 7. 26 ~ 8. 2, '13. 8. 5 ~ 8. 9
- 신청단체 : 사)청주여성의 전화
- 심사·선정 및 위·수탁 협약 체결 : '13. 8. 13(심사), '13. 9. 6(협약체결)
※ 위·수탁 기간 : '13. 9. 6 ~ '15. 12. 31

< 참고자료 2 : 사)청주여성의전화 법인 현황 >

법인·단체명	사)청주여성의전화
주 소	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57번길 (서운동33-3번지)
대 표 자	하 속 자
설립목적 (법적근거)	<p><정관 제 3조(목적)>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, 여성의 복지증진과 가정, 직장, 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땅의 평화와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한다.</p> <p>(법적근거)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다른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설치[(사)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] 운영한다.</p>
단체 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995. 11. 11 사단법인 청주여성의전화 창립총회 • 1997. 03. 01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개소 • 1998. 04. 01 부설 충북성교육센터 개소 • 1999. 02. 04 부설 충북가정폭력피해상담소 개소 • 2001. 09. 01 부설 가정폭력피해자 쉼터 개소 • 2009. 03. 01 부설 주거지원사업 개소 • 2010. 02. 04 부설 충북가정폭력피해상담소 폐소 • 2010. 02. 05 부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원교육훈련시설 신고 • 2012. 06. 00 부설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로 전환신고 • 2013. 09. 06 부설 충청북도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위·수탁 체결 • 2014. 04. 08 부설 충청북도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개소
기구도표	<pre> graph TD A[총회] --> B[이사회] B --> C[고문] B --> D[감사] C --> E[자문] C --> F[대표] F --> G[인사위원회] F --> H[청소년성문화센터] F --> I[청주성폭력상담소] F --> J[사무국] F --> K[가족보호시설] K --> L[주거지원사업] </pre>
주요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정·성폭력 등 여성문제에 관한 상담소 운영 • 여성복지 증진 및 여성인권 보호사업 • 여성의식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사업 • 여성문화 창조를 위한 사업 • 어린이, 청소년,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 사업 •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등

〈 참고자료 3 : 사)청주여성의전화 사업추진 내역 〉

구분	교육프로그램(회/인원)				교사 연수	자문 회의	기관 방문	워크숍 간담회	조직활동		
	계	체험관 교육	찾아 가는 성교육	기타					청소년	자원 활동	기타
2014년	1,191/ 19,539	950/ 12,653	235/ 6,522	6/ 364	10/ 16	2/ 15	13/ 29	2/ 60	-	19/ 98	5/ 13
2015년 10월말	742/ 11,265	551/ 7,195	191/ 4,070	-	-	-	14/ 37	1/5	-	42/ 61	-

- 성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: 27명 수료
- 지역사회 연계활동 : 25회/1,608명
 - 아웃리치(3/1,170), 행사 및 축제(22/438)